

전자상거래의 조세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노준화 · 왕현선 · 송연경*

A Study on How to Harmonize Our Tax Policy on E-Commerce with
Global Standards

Joon-Hwa Rho · Hyun-Sun Wang · Yeon-Kyung Song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된 전자상거래 과세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세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문제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자과세원칙의 수립,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문제, 과세방법의 문제 등이 있다. 둘째, 관세의 경우 디지털 재화에 관세를 부과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셋째,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 소득의 분류, 사업장간 소득의 배분, 거주지의 판정문제 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국과세원칙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재 무형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형재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나 원천지 과세원칙에 대해서는 OECD가 정의한 방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논문접수일 : 2003년 10월 30일

논문게재확정일 : 2003년 12월 16일

*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1.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된 과세제도 및 조세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세목별로 제시하는 데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상거래 패러다임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정부 등 대부분의 경제환경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차원에서는 인터넷이 기업의 사업방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전자상거래가 21세기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조세지원제도는 전자상거래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와 함께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조세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무형의 재화와 서비스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및 국제간의 거래에서 국제적 합의에 따른 과세제도의 정립 등이 그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조세문제는 각국의 세수 확보 경쟁 속에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OECD 등의 국제 기구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상거래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OECD의 재정위원회는 조세분야에 대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조직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세금을 부과할 형태가 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법에 명시하지 않은 과세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3년부터 국제추세를 고려해 과세대상

과 시기를 결정한 뒤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거래에 과세할 계획을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02년 2월 6일).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행연구 및 보고서를 검토하며 OECD, WTO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 세목별 과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 2 장에서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제 3 장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각국의 논의동향을 살펴본다. 제 4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의 과세제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제 5 장에서는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2.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선행연구와 국제적 논의 동향

2.1 선행연구

Jeffrey Owens(1997)는 전자상거래가 조세에 미치는 부정적·긍정적 영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비세제에 있어서 공급장소의 개념,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의 개념, 소득세 특성 규정 및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향후 국제적 협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조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홍기용(1999)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원칙을 기초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대두되는 조세이슈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세장소와 관련해서는 소비과세에서 사업장과 공급장소의 개념, 소득과세에서 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수입의 경우 대리납부제도 및 납세관리인제도의 개념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관세부과와 관련해서는 기존상거래와 전자상거래와의 차등을 없애기 위한 관세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납세자의 추적에 대해서는 전자기술발전과 함께 조세행정의 발전과 국제경향을 분석하였다.

김영택(2001)은 전자상거래의 소득세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 과세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공인회계사/세무사(25명), 세무공무원(42명), 세무회계관련전문직(33명)을 대상으로 그 인식정도를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소득세의 문제점은 거주지국 결정문제, 무형재화의 소득구분 문제, 고정사업장의 개념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는 소비지국에서 사업자등록 및 원천소득 결정하고, 소득개념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있으며,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재정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서희열 등(1999)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운 과세시스템의 전제조건과 참여주체들을 설정하고 과세모델을 설계하였다. 과세시스템 참여주체는 공급자측면, 수요자측면, 과세관청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방법은 납세주체를 사이버쇼핑몰 사업자와 수요자를 구분하고 대금결제방식은 신용카드(Credit Card), 데빗카드(Debit Card), 그리고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로 구분하였다. 모델을 평가한 결과 사업자모델은 기존의 조세체계와 같고 세금부과자와 납부자가 동일하여 수용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정규언 등(2000)은 국제 전자상거래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으로서 지급기관 대리납부제도에 대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현재 사용중인 지급시스템과의 기술적문제를 검토하고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정영기 등(2003)은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과세소득의 성격을 로얄티소득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사업소득에 속하는 서비스소득으로 볼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인터넷콘텐츠와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현행 과세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급기관 대리납부제도 과세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기본적인 조세원칙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세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각국별 조세제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부족하며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한 세목별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국가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함으로서 뒤따르는 조세문제는 여러 국가와 관련되어 국제조세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간 거래에 초점을 두고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국제적 논의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세수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에 놓일지 불리한 입장에 놓일지를 평가하여 국제적인 조세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조세영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조세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으며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가진다.

2.2 국제 논의 동향

2.2.1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ECD는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에 대한 연구를 가장 먼저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1996년 6월 재정위원회(CFA) 산하에 총 8개의 팀을 구성하였으며 제 1작업반에서는 OECD 모델 조약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의 적용방법, 고정사업장 및 사용료 소득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검토한다. 제 6 팀에서는 이전가격지침 적용문제를 검토하고 제 8 팀은 전자상거래가 전반적인 조세순응 및 조세회피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다.

OECD는 1997년 11월 핀란드의 투르크에서 「전세계 전자상거래 장벽 철폐(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는 주제하에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후 1998년 6월 오타와 각료회의를 거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비에 대한 기본원칙을 합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OECD, DAFFE/CFA(98)38/REV3, July 1998). 첫번째 원칙은 중립성(Neutrality)이다. 이 원칙은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간 또는 전자상거래 각 거래형태간에 중립적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품은 동일한데 거래형태가 다름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에 차이가 있다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경제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다. 그래서 조세부담은 각 거래형태에 관계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효율성(Efficiency)이다. 이 원칙은 세무당국의 징세비용과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명확성과 간편성(Certainty and Simplicity)이다. 이 원칙은 납세자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단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원칙은 효과성과 공정성(Effectiveness and Fairness)이다. 이 원칙은 적기에 정확한 세액을 부과해야하고 탈세 및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최소화 되어야하며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원칙은 유연성(Flexibility)이다. 이 원칙은 과세규정도 기술 및 산업발전에 탄력적이며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위원회는 위의 원칙 중에서도 특히 전자상거래의 조세가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부과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해서는 안되며 차별적 과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 외에도 구체적인 대안들이 논의되었는데, 고정사업장의 개념, 고정사업장에 대한 특별규정의 필요성,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적 성격의 명확한 정의, 지나친 조세경쟁 억제방법 등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오타와 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문그룹(TAG; Technical Advisory Group)을 결성하여 소비세 및 소득세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2001년 2월 지난 2년(1999-2000)간의 작업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소비지 과세원칙의 확인, 서버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정리, 사용료 소득에 대한 구분, 징세 방안 등의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보인 동시에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TAG 보고서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르며 B2B 거래의 경우 소비측 기업의 사업거점, B2C 거래는 소비자의 통상적인 거주지를 소비지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기업간 거래의 경우 소비지의 확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보

면 개인의 소비자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기술적 해결을 위해 신용카드 정보 이용, IP 주소 이용, 디지털 서명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소비세 징세와 관련하여 B2B 거래의 경우 자진신고를, B2C 거래의 경우 잠정적으로 국외사업자 등록방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외사업자 등록방안은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는 외국기업의 매출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기업은 소비지국에 등록하여 소비세를 징수하고 이를 해당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각 정세 방안별 장·단점은 <표 1>과 같다(OECD, DAFFE/CFA/WP/EC/WD(99)4/REV2, 2000.2).

<표 1> OECD가 제시한 정세방안 비교

| 정세방안 | 장 점 | 단 점 | 비 고 |
|---------------|---|--|--|
| 자진신고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B 거래에 있어 실행 가능성 이 높음 · 공급자의 납세협력비용최소화 · B2B 거래에서 징세비용 최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C거래에서 개인의 납세 협력비율이 낮음 | |
| 국외사업자의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진납부가 어려운 B2C 거래 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비거주자의 등록을 강제하기 곤란함 · 국외사업자에게 납세협력 비용을 부담함 · 과세당국의 징세비용도 증가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준에 미달하 는 사업자에게는 등 록면제를 통하여 협 력을 유도함 |
| 공급지과세와 양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의 거주기업자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 의무 부과가 효과적임 · 납세협력비용이 작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나라를 위한 세금징수 유인이 작음 · 공급자가 징세의무가 없는 비협정국에 위치한 경우, 세 수를 유실함 · 징세비용이 증가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배분을 위한 과 세당국간의 국제적 인 협조가 필수적임 |
|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정세방안이 될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협력비용이 큼 · 도입초기에는 징세비용도 클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에 대한 수 수료가 필요함 |

자진신고제도는 수입자가 수입서비스나 무형재화에 대하여 세액을 결정하여 국내 과세당국에 자진 납세하는 것으로서 B2B거래에 있어서는 많은 나라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다. 공급자측면에서는 공급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시켜서 B2B거래에서 징세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측면에서는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국외사업자등록방법은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에 등록을 하여 기업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국외사업자에게 추가로 국내에 등록을 유도하여 자진납부가 어려운 B2C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등록을 강제하기 어렵고 국외사업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키게 되며 과세당국의 징세비용도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공급지 과세와 양도방법은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에 대하여 공급자가 소비지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공급지 과세당국에 양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거주지 과세당국이 자국 거주기업에게 세금의 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 자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 의무부과가 효과적이고 납세협력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공급지의 과세당국이 다른 나라를 위한 세금징수 유인이 작고 공급자가 징세의무가 없는 비 협정국에 위치할 경우 세수유실과 징세협력비용이 커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방안은 전자상거래에서 대금결제는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결제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효과적인 징세방안이 될 수 있지만 납세협력의무를 공급자에게서 금융기관으로 이전시키므로 초기비용이 상당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납세협력

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징세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국제조세에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는데, 서버가 고정사업장소로 구별되며, 서버의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사람의 개입여부는 고정사업장과 별개의 문제이다. 컴퓨터 장치가 고정조건을 만족하면 고정사업장이 되며, ISP와 같은 독립적인 대리인은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컴퓨터 장치가 예비적, 보조적 기능으로 제한되어 사용되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2.2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998년 2월 EU가 결정한 전자상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원칙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디지털 거래는 부가가치세 목적상 서비스로 취급하고 EU안에서 소비된 서비스는 EU안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EU 밖에서 소비된 서비스는 EU의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EU의 기본원칙은 OECD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 EU 공급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EU 내의 개인에게 공급할 경우, EU 회원국 중에서 공급자가 선택한 하나의 국가에서 등록하고, 그 국가의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를 반대하여 2001년 4월 스웨덴이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그 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위치한 국가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과세당국간 세수입을 해당 과세당국에 이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영국은 비과세안을 주장하였지만 2001년 6월초에 열린 유럽재무장관회의(ECOFIN)에

서 두 가지 안 모두 통과되지 못하였다.

EU는 공급자가 위치한 곳을 공급장소를 보아 국내로 공급되는 디지털제품등에는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EU는 2003년 7월 1일부터 EU 이외의 지역에서 EU 회원국 국민들에게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와 통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EU 부가세를 적용받아서 제품을 판매하는 EU국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공급지 기준을 소비지기준으로 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해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를 제공하는 역외기업들은 EU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에 등록을 하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 기업은 해당 EU 회원국별로 등록을 해야 한다. 역외기업이 등록을 한 경우 등록번호(VAT ID number) 가 이메일을 통해 제공되며 부가세 부과는 해당 소비자 거주지의 부가세율에 의해 계산된다.

2.2.3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는 주로 전자상거래 관세 분야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1998년 3월 「전자상거래와 WTO의 역할(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1998년 5월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각료선언」을 채택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현행의 무관세 관행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999년 11월 시애틀 WTO 뉴라운드 초안에서는 「관세 면제의 잠정적 연장」을 포함시켰으며 제4차 도하각회(2001.11)에서도 제5차 각료회의(2003.9)까지 관세유예 선언을 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미국 및

선진국의 경우 영구한 무관세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는 당분간 관세부과유예를 유지하는 데 찬성하지만 영구화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일본은 전자적 전달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 관행은 계속 유지하되,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 문제는 기술 발전 사항을 보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등 개발도상국 입장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행 관세유예조치의 연장을 지지하면서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 포함여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반시설 구축 및 인적, 제도적 능력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2.2.4 미국

미국은 전자상거래 과세 문제에 대하여 지난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 정도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1993년 상무부 주도하에 전자상거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7월 1일 대통령 지시사항 형식의 포괄적인 보고서 「범세계 전자상거래 체계(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를 발표하였으며, 조세정책 논의는 1996년 11월 재무부 발간 「범세계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택적 조세정책 함의(Selected Tax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에서 출발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는 전자상거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인터넷 조세면제법(Internet Tax Freedom Act)를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규 세금의 도입을 금지하고 지방세인 판매세 부과를 2006년까지 중단하는 이른바 e-tax moratorium을 선언하였다. 인터넷 조세면제법은 전자상거래를 다중적, 차별적 과세로부터 보호하

고자 입법화되었으나, 동시에 전통적인 상거래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미 의회는 2000년 5월 인터넷 접속에 대한 부과금을 금지하고, 전화소비세도 폐지하였다. 이어서 WTO에 적극 개입하여 1998년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관세 모라토리움도 이끌어 냈다.

2.2.5 호주

호주의 경우 50,000 호주달러 이상의 거래를 하는 공급자는 국세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터넷이나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호주와 관련된 공급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용역의 경우 호주 내에서 행해졌거나 또는 공급자가 호주 내에 가지고 있는 기업을 통하여 공급이 일어난 경우 호주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며 후자의 경우는 고정사업장을 의미하며 이 경우 공급자가 호주 내에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체가 공급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1997년 호주 국세청에서 「세금과 인터넷(Tax and the Internet)」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호주의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은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 기존 과세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상거래 인터넷 사이트상에 호주기업의 등록번호 부여를 시도하고, 인터넷 사업을 위한 적절한 등록절차를 마련하여, 지하경제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전자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제정, 전자장부의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술력 이용을 촉진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호주국세청, 1997.8). 1999년 12월 호주 국세청은 「세금과 인터넷(Tax and the Internet)」 2차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2000년

7월부터 다른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GST(General Sales Tax)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호주국세청, 1999.12). 전자상거래에 대해 기본적으로 GST를 부과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정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2.2.6 일본

일본 통산성은 1996년 2월 「전자상거래진흥협회(ECOM: 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Japan)」을 설립하였다. 1997년 통산성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야 하며, 현 수준에서 인터넷 거래와 관련해 내국세를 중대시키는 정책을 지양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1998년 5월 미·일 양국은 「인터넷 상거래 무관세 협약」을 이끌어 내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인하여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종전의 비관세 정책에서 선회하여 디지털 상품에 대하여 소비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비세의 경우 일본 재무성은 현재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 공급자들로 하여금 일본 국세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도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본은 수입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리납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세이나 실물을 통하여 배달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일본통산성, 1997.5).

2.2.7 중국

중국은 전자상거래 육성보다 세금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전자상거래에 대해 과세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의 총국장은 모든 거래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관계 없이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자상거래의 세금감면은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성장에 세금의 원천을 고갈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취지아래 인터넷을 통한 거래를 추적하고 사이버 공간의 탈세를 막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 주도로 특별 연구팀을 구성하였다(염명배, 2001).

3. 전자상거래 조세문제 및 대응방안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발전은 조세분야에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가지는 무국경성(borderlessness), 이동성(mobility), 익명성(anonymity),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등의 특징은 기존의 조세체계를 무력화시켜 세수의 감소, 사이버조세피난처의 확산, 시장질서의 왜곡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과세기준에 맞는 과세시스템의 정비이다.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독자적인 과세방안을 결정하기보다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과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과세권 확보에 용이하고 납세자는 이중과세 등의 부당한 세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조세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관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주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3.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을 과세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문제를 살펴보면, 가. 디지털 재화를 상품으로 볼 것인지 용역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 나. 과세지가 소비지인지 공급지인지의 문제, 다. 과세방법의 문제이다.

3.1.1 디지털 재화의 분류 문제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재화인지 용역인지는 애매모호하며 디지털 재화의 분류 문제는 부가세, 관세, 소득세 적용에 차이를 발생시킨다. 서비스로 분류될 경우 관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와 용역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난다. 미국, EU, 캐나다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디지털 재화를 물품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EU는 부가세 목적상 디지털 재화를 용역으로 취급하도록 명문화하였고, OECD도 동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재화의 관세율이 높은 개도국의 경우 세수측면에서 재화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모두 과세하나, 수입에 대해서는 재화의 수입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조). 따라서 용역 수입에 대한 조세회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납부제도를 규정하였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제도는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재화의 거래를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면 대리납부제도(부가가치세법 34조)를 이용한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해 우리나라 혼자만의 규정은 의미 없으며 만일 우리나라의 규정과 외국의 규정이 다를 경우 국가간 조세 마찰이 일어나므로 국제적인 동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3.1.2 과세권 관할 문제

과세권 관할 문제는 과세권이 공급자의 소재지국에 귀속되는지 소비지국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재화와 용역의 국제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는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전자상거래의 무국경성, 이동성, 사이버마켓 등의 특성으로 인해 초기에는 공급지 과세원칙주장과 소비지 과세원칙 주장이 대립되었다. 이후 OECD 회원국들은 1998년 10월 오타와 회의에서 디지털 제품의 거래에 대해서 소비지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2001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는 다음과 같이 본다. 첫째, B2B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측 기업의 사업거점(recipient's business presence) 관할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 둘째, B2C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통상적인 거주지(recipient's usual residence)를 소비지로 본다.

EU의 경우 이와 비슷한 개념인 역외공급자 납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EU이외의 지역에서 EU 회원국 국민에게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전자서비스와 방송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에 있어 대체로 소비자의 입장이므로 소비지 과세원칙이 유리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과세방안으로는 대리납부제도의 과세 매커니즘이 적용되어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공급될 경우 해외 서비스 공급자는 소비지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EU와 같은 국외사업자 등록 방안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등록절차를 표준화시키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기술적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3.2 관세

우리나라의 경우 오프라인 전자상거래 거래상품(유형재)은 세관을 통과해야 하므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온라인 전자상거래 거래상품(무형재)은 현행 관세법상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당분간 현행의 무관세 부과의 관행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WTO 등 국제기구의 의견이 뒷받침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정책은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따를 수 있으며 수입국의 입장에 있는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과 EU 여타 국가들은 심각한 관세수입 감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김영춘, 2002). 또한 관세 과세상 과세대상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국경 통과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관세대상 파악이 어려워서 관세부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물품중 유형의 상품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상품의 관세부과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음악, 영상물, 오락물, 인터넷을 통한 금융서비스, 회계, 법률 등과 같은 무형의 상품거래는 관세법상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징수시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 온라인 거래에 대해 무관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해외로부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거나 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등의 거래를 기술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워 관세부과가 곤란한 실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의 무관세화는 수출국가에게는 이익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 입장에서는 많은 재정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EU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이 관세수입 증대를 위하여 무형의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향후 관세부과를 주장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기관과 연계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데 이터베이스 구축 및 과세모델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3 소득세

전자상거래가 야기하는 소득세 부분의 문제는 국제조세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기본원칙은 원천지 과세원칙(source principle)과 거주지 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득세법에는 가. 고정사업장의 개념, 나. 소득의 종류, 다. 사업장 간 소득의 배분, 라. 거주자 판정 등이 해결해야 할 주요한 조세문제라고 할 수 있다(OECD, 2001.2).

3.3.1 고정사업장

우리나라에서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납

부· 및 과세처분등이 행해진다. 국내사업장은 고정사업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되고 있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120조, 법인세법 94조).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은 ① 지점·사업소 또는 영업소 ②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③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④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하는 장소 ⑤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를 말하며,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와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위하는 때에는 그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는 ①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②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③ 비거주자가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④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등은 국내사업장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고정사업장이 설치된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원천지국 과세가 국제조세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고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천지국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소

득세법 체계를 살펴보아도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과세권이 없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는 기존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자상거래의 고정사업장 문제는 웹사이트나 서버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특정 컴퓨터 서버에 위치한 기업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서버와 웹사이트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OECD의 기술자문 그룹 TAG는 1999년 10월 2000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OECD 모델 조약 해석서 중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한 후 2000년 12월에 모델조약 해석서의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였다[27]. 첫째, 서버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지만 웹사이트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버는 컴퓨터 장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고정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버가 광고와 같은 예비적 보조적인 기능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면 고정사업장을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전자상거래에서는 ISP로부터 서버의 일부를 임대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웹사이트와 서버의 구분이 필요하다. 서버를 임대해 웹사이트를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버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 한편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웹사이트가 저장된 서버를 보유·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만족되면 그 서버가 고정사업장을 형성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OECD의 논의를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전

자상거래의 고정사업장의 개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3.3.2 소득의 종류

전자상거래하에서는 디지털화된 정보의 재생산 및 유통이 기술적으로 용이해짐에 따라 현재의 소득구분 원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졌다. 즉,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는 것을 무형재에 대한 특허권의 사용허가로 볼 것인지 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의 개념이 달라진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도서, 음악, 이미지등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은 전자 형태로 거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상의 디지털 재화의 거래는 기존 조세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의 분류원칙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 디지털 재화의 판매 및 임대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게 된다.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은 소득의 발생지국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반면에 사용료소득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사용료소득에 비하여 유리하게 과세되는 것이다. 소득의 구분을 위해서 OECD의 TAG는 2001년 2월 최종보고서에서 디지털 재화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OECD, 2001.2). 한편, 국제조세조약에서는 각 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지에서 과세가 허용되는지 여부, 허용되는 경우 세율의 한도 등을 정해놓고 있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 과세가 허용되지 않는 반면 이자·배당소득 등의 사용료소득에 한해 원천지 과세가 허용되며 제한세율은 대체로 15%이내이다. OECD의 TAG는 28가지 전자상거래의 유형에 대해 사용료와 사업소득 중 어느 쪽에 포함시켜야 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OECD의 정의

에 따른 사용료소득의 개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둘째, 노하우(know-how)의 전수에 대한 대가, 셋째, 산업, 상업 및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등이 그것이다. 사업소득에 대한 OECD 모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한하여 원천지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을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종파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③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세법에서 정하는 용구

위와 같은 사용료 소득에 대한 규정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전의 환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서 필수적인 컴퓨터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정보의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소득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3.3.3 사업장간 소득의 배분

전자상거래에서의 사업장간 소득의 배분문제가 대두된다. TAG는 2001년 2월까지 고정사업장 소득 배분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고정사업장이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의 역할, 사업에 사용된 재산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 기업의 각 부문별 위험부담의 내용 등을 분석하여 각 부문의 적절한 소득이 독립기업가격 원칙에 따라 배분되어야한다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01.2).

3.3.4 거주자의 판정

사업소득 TAG는 기업이 두 개이상의 국가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그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을 제시하였다(OECD, 2001.2). 즉, 실질적인 관리장소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이나 상업적인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여러 지역에 존재하거나 이동 가능하게 만들었다. 거주자의 판정문제에 대해서 OECD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계속적인 논의에 참여하여 논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4 세무행정

세무행정의 과제는 납세자를 확인하고 과세대상 거래와 소득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며 당해 소득과 납세자 등 각종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세법의 효과적 시행과 이를 통한 세수확보이다. 그러

나 전자상거래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세무행정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전자상거래로 인한 문제점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사실, 거래의 내용 및 거래당사자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확인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당사자를 확인하고 거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대금을 지불할 때 경유기관으로 은행이나 결제기관을 활용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국제간 과세협정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소비지국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4.1 디지털 증명서(Digital Certificates)를 통한 전자상거래 확인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당사자에게 디지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상거래시에 의무적으로 확인되도록 한다면 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과 거래내용 등이 확인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서는 주문이 전자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서류가 과세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인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자서류가 수정되지 않았으며 기록의 조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증명시스템의 개발은 전자상거래에서 축적된 전자서류가 조작없이 과세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신용도, 2000). 디지털 증명서와 유사하게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이 제시한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¹⁾이 전자상거래에서

1) 이 방안은 호주 국세청이 1997년에 제안한 방안으로서 이름이나 사업명, 호주기업고유번호(ACN: Australian Company Number)등의 사이트를 식별할 수 있게 해

거래자 확인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 방안은 기존의 상거래방식과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과세당국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3.4.2 결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과세방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소비자는 공급자에게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은행계좌 입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지불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세에 필요한 정보 및 원천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불결재시스템에서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는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의 수집과 원천징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지불결제시스템을 현실성 있게 잘 활용한다면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서 발생되는 과세정보의 획득어려움 및 과세점상실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이 중요한 기능을 함에 있어 거래의 익명성의 훼손 및 원천징수시의 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획득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지불결재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지불방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는 사이트식별기(site identifier)를 상업적인 웹사이트가 필수적으로 가지도록 해야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and the Internet」, August 1997)

3.4.3 조세 국제협조의 강화를 통한 과세권 확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지국 과세당국은 외국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반면, 공급자국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등록정보, 국가별 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지국 과세당국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지국의 과세당국이 필요한 과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제간 조세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조세협정은 이 중과세의 방지가 대부분이었으나 전자상거래에서는 과세정보의 교환, 적절한 원천과세의 확보 및 조율이 국제간 협조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므로 국제간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여 전자상거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4.4 IT신기술을 이용한 조세행정 및 납세자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조세행정은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하지만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한 기술적 진보는 조세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거래추적이 가능한 전자화폐의 등장은 세무행정상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디지털증명서 또는 디지털공증을 통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신원 및 거래금액의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 조세행정상의 또 다른 과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납세자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납세자서비스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인터넷납세신고 및 전자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정보제공서비스와 납세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개별정보를 등록·신청하여 납세신고와 오류수정단계를 거쳐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토록하며, 국세청사이트의 납세신고 프로

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납세신고 및 납부를 진행함으로써 신고에서 사실증명·납부까지를 확실히 연계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신고, 전자납부, 홈페이지서비스 확대실시,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조세행정을 위해서는 조세시스템 간소화, 전자서명 인증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개발, 국제적으로 수용가능한 정보요구의 수준결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회원국간의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국제적 조세합의를 이루고 IT기술을 이용한 납세프로그램의 개발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급속한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확산된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 현황 및 대응방안을 세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조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및 각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OECD, EU, WTO, 미국, 호주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조세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문제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주요 조세이슈는 소비세(부가가치세)과세의 경우 소비지과세원칙의 수립,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문제, 과세방법, 관세부과의 경우 디지털 재화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 소득의 분류, 사업장간 소득의 배분, 거주지의 판정문제 등 논란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소비지 과세원칙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국제적 규범을 따르고 있지만 디지털재화나 서비스의 거

래의 경우 수요국의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디지털제품의 소비에 대한 과세권은 우리나라가 확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관세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현재 유형재는 관세를 부과하며 무형재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WTO 등 국제기구도 이러한 원칙을 지지하고 있지만, 관세수입 측면에서는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형재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나 원천지 과세원칙에 대해서는 OECD가 정의한 방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장간 소득의 배분 문제와 중복거주자문제에 대해서 아직 OECD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계속적인 논의에 참여하여 논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조세정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OECD 등의 국제기구와의 논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 문제에 대하여 OECD, EU, WTO등의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의 논의 및 정책방향을 세목별로 분석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세법규정을 입안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에게도 유익한 조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조세와 관련된 자료 획득의 어려움으로 구체적인 실증적 연구나 설문조사 및 표본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 조세 문제의 상당부분에 대해서 국가간 논의가 진행 중에 있

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동향을 계속 검토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현

- [1] 김영춘, “전자상거래와 관세관련 논의 동향”, 『E-Commerce』,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 pp.35-38.
- [2] 김영택, “전자상거래의 소득세 과세방안”, 『세무회계연구』 제8권 제1호, 2001.
- [3] 김석오,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조세이슈에 관한 국제동향 비교분석과 접근전략 : 간접세제를 중심으로”, 『E-Commerce』,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 pp.26-34.
- [4] 노영훈·연태훈·홍범교,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12.
- [5] 서희열, 이강호,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3호, 1999. pp.139-160.
- [6] 신용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조세정책적 과제 및 대응방향”, 『정보통신학술 연구과제』, 2000.3.
- [7] 염명배,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거래가 국제 조세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보통신학술 연구과제』, 2001.2.
- [8] 정규언·구상희·박정우, “국제전자상거래의 효과적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으로서 지급기관 대리납부제도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9권 제 1호, 2000. pp.105-157.
- [9] 정영기·박정우,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의 고찰”, 『상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2003. pp.619-650.
- [10] 통계청, 『2002년 2/4분기 전자상거래 통계 조사결과』, 2002.12., www.nso.go.kr
- [11] 산업자원부, 『세계전자상거래 현황』,

2002. www.nocie.go.kr
- [12] 삼성경제연구소, 『전자상거래 현황』, 1999. www.seri.org
- [13] 홍기용,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쟁점과 대응”, 『세무학연구』 제4호, 1999.8. pp.277-301.
- [14] 홍범교 · 안종석, 『전자상거래와 조세 : 국 제적 논의동향과 정책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1.12.
- [15] 홍범교, 『전자상거래와 조세관련 국제논의 동향』,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7.
- [16]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and the Internet* : “Discussion Report of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Electronic Commerce Project”, Canberra :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Aug, 1997.
- [17]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and the Internet* : Second Report, December 1999.
- [18]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CEC),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pril, 1997.
- [19] European Commission, *Global Information Networks: Ministerial Declaration*, European Ministerial Conference at bonn, 1997
- [20] E-marketer, www.emarketer.com.
- [21] Japan,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Towards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 For Rapid Progress in the Japanese Economy and World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May, 1997.
- [22] Jeffrey Owens, “Taxation in Cyberspace”, 1997.
- [23] OECD,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1996.
- [24] _____,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July, 1998.
- [25] _____, *Clarific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Definition in E-commerce*, Dec, 2000.
- [26] _____, *Committe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Competition Issues in Electronic Commerce*, Feb, 2001.
- [27] _____, *Electronic Commerce: The Challenges to Tax Authorities and Taxpayer*, TrukuFinland, 18th Nov, 1997.
- [28] _____, *Report by the Technical Advisory Group on Monitoring the Application of Existing Treaty Norms for the Taxation of Business Profits(Business Profits TAG)*, Dec, 2000.
- [29] _____, *Tax Treat Characterization Issues Arising from E-Commerce*, Feb, 2001.
- [30] _____, *Attribution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on Establishment Involved in E-Commerce Transactions*, Feb, 2001.
- [31] _____, *The Impact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on the Application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s a Tie Breaker Rule*, Feb 2001.
- [32] United States,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July, 1997.
- [3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easury, *Selected Tax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Treasury), November, 1996.
- [34] WTO, various documents(1996~2003)

■ 저자소개**노준화(Rho, Joonhwa)**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공인회계사로서 5년간 회계법인에 근무하였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경영학부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회계감사, 세무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이다.

E-mail: jhrho@cnu.ac.kr

Tel: 042-821-5544

**송연경(Song, Yeonkyung)**

충남대학교 회계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회계감사와 재무회계 분야이다.

E-mail : yksong21@dreamwiz.com

Tel: 042-860-5255

**왕현선(Wang, Hyunsun)**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회계감사와 재무회계 분야이다.

E-mail: wanghs@cnu.ac.kr

◆ 이 논문은 2003년 10월 30일 접수하여 1차 수정을 거쳐 2003년 12월 16일 게재확정 되었습니다.